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24. 3. 27.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그간의 진행상황	1
III. 부담금 정비 방안	2
1. 부담금 정비 기준	2
2. 부담금 정비 대상 · 규모	3
3. 부담금별 정비안	4
4. 부담금 정비의 의의	9
IV.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10
V. 향후 추진계획	11

I . 추진 배경

- (부담금 정의) 반대급부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조세 외에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부담금관리법 §2)

* 수수료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사용료는 시설·재산 사용의 대가

- (부담금 현황) '22년 말 기준 91개, 224조원 규모 운용중(GDP의 약 1%)

- '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리 틀^{*}을 마련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부담금운용평가 등을 통해 지속 정비

* 부담금관리법(별표)에 부담금 열거, 신설 심사를 통해 부담금 신·증설 통제 강화

** 부담금 수(개) : ('05) 102 → ('15) 94 → ('17) 89 → ('18~'22) 90 → ('23~) 91

- (개선 필요성)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도 존속 중인 상황

* (언론·경제단체) 국민들이 부담금 부과 사실을 모르거나,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

- 부담금관리기본법도 제정 이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장기 존속 부담금 정비, 신설 심사 강화 등 제도혁신 필요

⇒ ①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②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혁신 병행 추진

II . 그간의 진행상황

- (정비기준·대상 논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 민관 TF를 통해 부담금 정비기준 및 정비대상 등 논의

- (관계부처 협의)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을 거쳐 최종 부담금 정비 방안 마련

III. 부담금 정비 방안

1. 부담금 정비 기준

- (정비기준)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 정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건*, 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 등에 따라 마련

*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2002헌가2, 2003.12.18.)

- (폐지 기준) 부담금 정의 未부합, 부과목적-대상 간 관련성 미흡 등

-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과목적-대상 간 관련성이 미흡하고 특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담금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부과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부과 실효성이 낮은 경우

- (감면 기준) 부과요율·대상 등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 등

- 지출 대비 부담금 수입이 과다한 경우
- 부담금 수입 일부를 사용용도와 다르게 운용하는 경우
- 물가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정비제외, 55개) ①국민건강·환경보전 등 궁정적 외부효과,
②금융기관 출연금, ③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구 분	개수(개)	주요 부담금
제외 부담금	55	
①-1 국민건강·안전 부담금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①-2 환경보전 부담금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부과금(환경오염물질)■ 생태계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①-3 농·축·수산업자 지원 부담금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축·수·임산물 수입이익금
② 금융기관 공적기금 출연금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③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 부합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 부담금 정비 대상 · 규모

既정비 부담금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금번 정비안(32개)</th></tr> <tr> <th>폐지</th><th>감면</th><th>경감 규모</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8개</td><td style="text-align: center;">14개</td><td style="text-align: center;">2.0조원</td></tr> </tbody> </table>	금번 정비안(32개)			폐지	감면	경감 규모	18개	14개	2.0조원	정비 부담금
금번 정비안(32개)												
폐지	감면	경감 규모										
18개	14개	2.0조원										
4개			36개									

(정비대상) 91개 부담금 중 총 32개

* 既정비(1.1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 추진 중인 4개 부담금 포함시 36개

부처	폐지(18개)	감면(14개)
기재부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교육부	■ 학교용지부담금	-
외교부	■ 출국납부금	■ 국제교류기여금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
문체부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출국납부금
산업부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농식품부	-	■ 농지보전부담금
환경부	■ 수질개선부담금 ■ 수익자부담금(댐건설법)	■ 폐기물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용부	-	■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토부	■ 원인자부담금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시설부담금(산업단지) ■ 시설부담금(물류단지)	■ 개발부담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해수부	■ 수산자원조성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방제분담금
산림청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경감규모) 연간 2.0조원 수준(폐지 △0.5조원, 감면 △1.5조원)

* 32개 정비대상 부담금 '24년(계획) 9.6조원 대비 21% 수준

- 1년간 한시 감면: 개발부담금(△3,082억원), 석유수입부과금(△1,516억원)
- 단계적 감면 확대: 전력기금 부담금(1년차 △4,328 → 2년차 △8,656억원)

3. 부담금별 정비안

1

국민 체감 부담 완화 : 8개 부담금

◇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폐지·감면

- ① (전력기금 부담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 ($3.7\% \rightarrow^{24.7} 3.2\% \rightarrow^{25.7} 2.7\%$)하여 국민·기업 부담을 약 9,000억원 경감
- ②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4천원 인하(11→7천원)하고 12세까지 면제(現 2세)하여 가족여행시 부담 경감
* (외교부) 1천원 → 폐지, (문체부) 1만원 → 7천원($\triangle 3천원$)
- ③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 유도
*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
- ④ (국제교류기여금)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기여금을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 유효기간 10년($1.5 \rightarrow 1.2$ 만원), 유효기간 5년($1.2 \rightarrow 0.9$ 만원)
- ⑤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 ($24,242 \rightarrow 16,730$ 원/톤)하여 가스요금 인하 유도
- 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분담금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 \rightarrow 0.5\%$)하여 보험료 인하 유도
- ⑦ (수산자원조성금) 어업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조성금을 폐지하여 영세 어민 부담 완화

< 국민 체감 부담 완화 >

부담금명 ('24년 계획)	정비방안	경감액(억원) (연간 환산*)	기대효과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32,028억원)	단계적 요율 인하 (3.7→ ^{1년차} 3.2→ ^{2년차} 2.7%)	1년차 △4,328 2년차 △8,656	연 62만원(뿌리업종), 8,000원(4인 가구) 경감
외교부 출국납부금(410억원)	폐지	△410	출국당 30,000원 경감
문체부 출국납부금(4,006억원)	납부액 인하(¹ →0.7만원) 및 면제대상 확대(² →12세 미만)	△1,344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부부)
문체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294억원)	폐지	△294	영화 1회 관람시 약 500원 경감 (관람료 15,000원 기준)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696억원)	복수여권(△3천원) 단수·여행증명서(면제)	△145	복수여권 발급시 3,000원 경감
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17,524억원)	1년 한시 LNG 부담금 30% 수준 인하	△1,516	연 6,160원 경감 (4인 가구, '23년 월평균 도시가스 사용량 기준)
국토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348억원)	3년 한시 부과요율 50% 인하	△174	연 600원 경감 (차량 1대 기준)
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8억원)	폐지	△8	영세 어민 부담 완화

* '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2

기업 경제활동 촉진 : 11개 부담금

◇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 폐지·감면

□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 유도

- ①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폐지(약 △3,600억원)
- ②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개발이익의 20%
또는 25%)을 **'24년 한시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약 △3,000억원)

□ 부담 형평성을 감안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 ①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기준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

*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 ②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을 다수 배출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감안,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 원)

- ③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의 영세성 감안,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부과요율 인하(0.00074→0.0005%)

- ④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여객선 안전운항 책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여객운임액의 2.9%) 폐지

□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뒷받침

- ①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非 농업진흥 지역에 한해 부과요율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 약 △3,500억 원)

-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요율 일부 인하

* 국가산업·물류단지, 의료·공익시설, 광물 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 기타 정책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 완화

- ①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연계고용* 감면한도 상향(납부액 60→90%)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중 일부를 감면

②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 및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은 껌을 부담금(판매가의 1.8%) 부과대상에서 제외

③ (방제분담금) 당초 부과 목적인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분담금 납부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 기업 경제활동 촉진 >

부담금명 ('24년 계획)	정비방안	경감액(억원) (연간 환산*)	기대효과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3,598억원)	폐지	△3,598	
국토부 개발부담금 (4,756억원)	'24년 한시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3,082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 유도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1,516억원)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차 50% 인하	△133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1,561억원)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11	
산업부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21억원)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요율 인하(0.00074→0.0005%)	△6	부담 형평성을 감안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해수부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53억원)	폐지	△53	
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13,773억원)	非 농업진흥지역 부과요율 인하 (개별공시지가 30→20%)	△3,540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뒷받침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286억원)	면제대상 확대 등 (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155	
고용부 장애인고용부담금 (8,437억원)	연계고용 감면 한도 상향 (납부액의 60→90%),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지주회사 계열사, 의료업 등)	△529	기타 정책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 완화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2,003억원)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31	
해수부 방제분담금 (293억원)	부과요율 인하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31	

* '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3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 13개 부담금

- ◇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인한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

<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

부담금명 (24년 계획)	경감액(억원) (연간 환산*)	폐지 사유
기재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153억원)	△153	당초 부담금 부과목적 달성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158억원)	△63	지하수이용부담금과 부과목적·사용용도가 유사 * 지자체 수입분(60%)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
산업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2,400억원)	-	부담금 성격 미부합 * 민간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징수
문체부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29억원)	△29	부담금 성격 미부합
문체부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국토부 도로법 원인자부담금(20백만원)	△0.2	
국토부 시설부담금(산업단지)(89백만원)	△0.9	
국토부 시설부담금(물류단지)(-)	-	부과실적 미흡, 부과 실효성 낮음
국토부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44백만원)	△0.4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7백만원)	△0.1	
해수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환경부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	부과실적 없음
산업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 '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4. 부담금 정비의 의의

① '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

- 국민건강·환경보전 목적, 원인자·수의자 부담원칙 부합 등 55개 부담금과 既정비 4개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 정비
- 연간 2.0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 경감
 - 정비대상 부담금 9.6조원('24년 계획) 대비 20% 이상
- 그간 부담금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90개 내외로 유지 중이던 부담금 수를 69개로 대폭 축소
 - * (現 부담금) 91개 - (금번 정비시 폐지) 18개 - (既정비) 4개 = 69개

②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 가능한 부담금에 집중

-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실생활과 밀접함에도 그간 국민들이 납부 사실조차 잘 몰랐던 부담금* 중심으로 정비
 - *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등
- 기업·사업시행자 등 부담으로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정비하여 국민 부담 전가분 완화 유도
 - *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③ 부과 실효성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던 부담금 일제 정비

-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운영 가능하거나 장기간 부과실적이 저조함에도 관행적 존치, 규제로 작용하는 부담금 정비

④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시행령 등 개정 사항은 '24.7월 시행, 폐지 부담금 관련 일괄개정 법률안은 '24.下 국회 제출

⇒ 부담금 **부과목적·원칙에 맞지 않거나, 손쉬운 재원 조달을 위해 국민·기업에 부과하던 부담금을 과감하고 신속히 정비**

IV.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 ◇ 금번 부담금 전면 정비와 병행하여, 존치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 지속 점검, 신설 통제 강화 등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1. 부담금 지속 정비

- ① (정비 이행) 폐지·감면 완료시까지 금번 정비방안 이행 점검 실시
- 법령 개정, 요금·가격 인하 등 부담금별 정비방안 이행을 점검하고, 폐지 부담금은 「일괄개정 법률안」을 통해 조속히 추진
- ② (지속 정비) 존치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 점검
- 금번 정비 이후 존치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요율 적정성 등 지속 점검·정비

2.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 ① (존속기한 설정) 부담금 존속기한을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설정
- 현행 존속기한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에 따라 6개 부담금만 설정 중 → 모든 부담금에 예외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 설정
- ② (신설 타당성평가) 신설 심사 강화를 위한 타당성평가제도 도입
- 부담금 신설 前 객관적인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실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에서 신설 여부 심의
 - * 현재는 부처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만 제출 중 → (예) 부담금운용평가단 등을 통해 객관적·중립적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실시

③ (신속한 구제)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분쟁 심사·조정

-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쟁송 또는 현재 심판청구 이전에 신속한 권리구제 유도

V. 향후 추진계획

- (시행령 개정)** 각 부처 시행령 개정 사항은 '24.7월 시행을 목표로 국무회의 일괄 상정·의결 추진('24.上)
- (법 개정)** 18개 폐지 부담금 관련 일괄개정 법률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24.下)

< 부담금별 법령 개정계획 및 일정 >

부처	부담금명	조치사항	시행시기
□ 시행령 등 개정(13개)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1 개정	
문체부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2 개정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개정	
환경부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고시 개정	'24.7월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삭제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6의2 개정	
고용부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경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4 개정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개정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개정	
해수부	방제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9 개정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개정	

부처	부담금명	조치사항	시행시기
□ 법 개정(20개)			
국토부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신설	'24.下
기재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제1항 개정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삭제	
외교부	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법 제155조 삭제	
문체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삭제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관광진흥법 제64조 제1항 삭제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관광진흥법 제64조 제2항 삭제	
산업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광업법 제87조 삭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삭제 및 제17조 개정	'25.1월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삭제, 지하수법 제30조의3 개정	
	수익자부담금 (댐건설관리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삭제	
고용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2 신설	
국토부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제91조 삭제	
	시설부담금(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삭제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제2, 3항 삭제	
	시설부담금(물류단지)	물류시설법 제44조 삭제	
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삭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법 제40조 삭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해운법 제22조의2 삭제	

1

국민 체감 부담 완화 : 8개

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산업부, '01년~)

- * '19년 징수 2조 892억원, '22년 징수 2조 3,784억원, '24년 계획 3조 2,028억원
 - (현황)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의 3.7%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
 - (정비방안) 부담금 요율 단계적(2년) 인하($\triangle 1.0\% p$)
 - (現) 3.7% → ('24.7~'25.6) 3.2%($\triangle 0.5\% p$) → ('25.7~) 2.7%($\triangle 1.0\% p$)
-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② 출국납부금(문체부, '97년~, 외교부, '17년~)

- * (문체부) '19년 징수 4,006억원, '22년 징수 667억원, '24년 계획 4,006억원
(외교부) '19년 징수 410억원, '22년 징수 67억원, '24년 계획 410억원
 - (현황)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
 - * 공항 1.1만원 - 문체부 1만원, 외교부 1천원 / 항만 - 문체부 1천원
 - 해외여행 출국자와 개도국 질병 예방간 관련성 미흡
 - (정비방안) 문체부 면제대상 확대 및 납부액 인하, 외교부 폐지
 - 면제대상 확대(만 2→12세 미만), 출국시 납부액 인하(1.1→0.7만원)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주특별법 시행령, 국제질병퇴치기금법 개정]

③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07년~)

- * '19년 징수 546억원, '22년 징수 179억원, '24년 계획 294억원
- (현황) 한국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를 관람객에게 부과
 - 영화 산업 등 진흥에 대한 영화 관람자의 책임성 인정 곤란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
 - 다만,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영화 진흥사업은 다른 재원을 통해 지속 지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④ 국제교류기여금(외교부, '91년~)

- * '19년 징수 594억원, '22년 징수 289억원, '24년 계획 696억원
- (현황) 국제 우호친선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기금 조성(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재원)을 위해 여권 발급자에게 부과
 - * 복수여권(10년 15천원, 5년 12천원), 단수여권(5천원), 여행증명서(2천원)
- (정비방안) 기여금 인하(복수여권 △3천원, 단수여권·여행증명서 폐지)
 - 민간 기부금 성격의 부담금을 활용한 공공외교 필요성을 일부 감안하여, 기여금 인하

모금대상	모금액		⇒	모금대상	모금액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복수여권 10년	15,000원	미화 15불		1. 복수여권 10년	<u>12,000원</u>	<u>미화 12불</u>
2. 복수여권 5년	12,000원	미화 12불		2. 복수여권 5년	<u>9,000원</u>	<u>미화 9불</u>
3. 단수여권	5,000원	미화 5불		3. (삭제)	-	-
4. 여행증명서	2,000원	미화 2불		4. (삭제)	-	-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개정]

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 판매부과금(산업부, '94년~)

* '19년 징수 1조 6,041억원, '22년 징수 1조 6,606억원, '24년 계획 1조 7,524억원

- (현황) 석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를 수입·판매하는 석유정제·수출입·판매업자에게 부과
 - * (수입) 원유·석유제품 16원/l, 천연가스(LNG) 3,800원/톤(비발전용은 24,242원/톤)
(판매) 고급휘발유 36원/l, 부탄(LPG) 톤당 62,283원
- (정비방안) 1년간(한시) 부과요율 인하
 - 천연가스(LNG) 부과요율: 24,242→16,730원/톤($\triangle 30\%$ 수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국토부, '77년~)

* '19년 징수 322억원, '22년 징수 336억원, '24년 계획 348억원

- (현황)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예방 지원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책임보험료의 1.0% 부과
- (정비방안) 3년간(한시) 부과요율 한시 인하($1.0 \rightarrow 0.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⑦ 수산자원조성금(해수부, '02년~)

* '19년 징수 6억원, '22년 징수 11억원, '24년 계획 8억원

- (현황) 수산자원조성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어업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은 어업인 등 수혜자에게 부과
 - 영세 어민 대상 부담금으로 부담 경감 필요, 부과실적도 미미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①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95년~)

* '19년 징수 3,040억원, '22년 징수 2,906억원, '24년 계획 3,598억원

- (현황) 학교용지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독주택용 토지를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
 - * 공동주택(분양가격의 0.8%), 단독주택용 토지(분양가격의 1.4%)
- 무상교육 실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 학교용지 수요 지속 감소, 기조성된 여유재원 등 감안 필요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

▶ [\[학교용지법 개정\]](#)

② 개발부담금(국토부, '89년~)

* '19년 징수 2,978억원, '22년 징수 5,727억원, '24년 계획 4,756억원

- (현황) 토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택지, 산업·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 부과
 - * (부과요율 20%)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 및 도시환경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부과요율 25%)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 (정비방안)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24년 한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③ 환경개선부담금(환경부, '91년~)

- * '19년 징수 3,878억원, '22년 징수 2,164억원, '24년 계획 1,516억원
 - (현황) 환경개선 비용 마련을 위해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
 - (정비방안) 영세 자영업자 대상 기준 부과금액 인하
 - 배기량 3,000cc 이하 및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 자동차 대상 기준 부과금액 50% 인하($15,190 \rightarrow 7,600$ 원/반기)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

④ 폐기물처분부담금(환경부, '16년~)

- * '19년 징수 2,044억원, '22년 징수 1,577억원, '24년 계획 1,561억원
 - (현황)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에게 부과
 - * 소각·매립량(kg) × 부과요율(10~30원/kg) × 산정지수
 - (정비방안) 감면 대상 중소기업 확대(매출액 $600 \rightarrow 1,000$ 억 원)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⑤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산업부, '91년~)

- * '19년 징수 10억원, '22년 징수 7억원, '24년 계획 21억원
 - (현황) 오존층에 유해한 특정물질의 규제 및 대체물질 개발·이용 촉진을 위해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
 - (정비방안) 규제물질로 추가 지정되어 '23년부터 징수대상에 포함된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부과요율 인하($0.00074 \rightarrow 0.0005\%$)
 - * 제1종 특정물질(CFC, HCFC 가스)은 '30년 내 전폐 예정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⑥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해수부, '72년~)

- * '19년 징수 55억원, '22년 징수 66억원, '24년 계획 53억원
- (현황) 공동운항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 운영비용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여객운임액의 2.9%)
 - 여객선 안전운항 책임을 사업자에서 국가로 전환('10년 해운법 개정)함에 따라 사업자 대상 부과 타당성 낮음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

▶ [해운법 개정]

⑦ 농지보전부담금(농식품부, '73년~)

- * '19년 징수 1조 1,746억원, '22년 징수 1조 3,312억원, '24년 계획 1조 3,773억원
- (현황)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
 - * 농지전용면적(m^2) × 개별공시지가의 30%(상한 5만원/ m^2)
- (정비방안) 非 농업진흥지역 부과요율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
 - 보전·관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부과요율 인하(개별공시지가의 30→20%, 농업진흥지역은 현행 유지)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전통사찰, 관광단지(읍·면 지역)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25년)

▶ [농지법 시행령 개정]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산림청, '90년~)

* '19년 징수 1,580억원, '22년 징수 2,638억원, '24년 계획 2,286억원

- (현황) 대체산림자원 조성 비용 마련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m^2) × 부과요율(원/ m^2)

- (정비방안) 면제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인하
 - 면제대상 확대(현행: 공용·공공용, 중요 산업시설 등 → 추가: 국가산업·물류단지, 의료·공익시설, 광물 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 부과요율* 내 개별공시지가 반영률 인하(1.0→0.1%)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⑨ 장애인 고용부담금(고용부, '90년~)

* '19년 징수 6,191억원, '22년 징수 7,637억원, '24년 계획 8,437억원

- (현황)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충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부과

*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수 × 1인당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

- (정비방안) 연계고용 감면한도 상향 및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 연계고용 감면한도 상향(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액의 60→90%)
 - 지주회사 계열사, 의료업 등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부 고시) 개정]

⑩ 폐기물부담금(환경부, '92년~)

* '19년 징수 1,964억원, '22년 징수 2,099억원, '24년 계획 2,003억원

- (현황)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제품 등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
 -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음에도 여전히 껌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
- * 자연상태에서 쉽게 분해되고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
- (정비방안)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판매가의 1.8% 부담금 면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⑪ 방제분담금(해수부, '97년~)

* '19년 징수 259억원, '22년 징수 287억원, '24년 계획 293억원

- (현황) 기름유출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조치 소요 비용을 유조선·선박 등 방제선* 배치의무자에게 부과
 - *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제장비를 갖춘 선박
- (정비방안) 부과요율 인하

구분	현행(원)	⇒	변경(원)	감면율
기름저장시설 (100리터당)	경유 2.76		<u>2.48</u>	△10.3%
	경유 外 9.85		<u>8.84</u>	△10.3%
유조선 (톤당)	내항선 5.48		<u>2.74</u>	△50.0%
	외항선 16.46		<u>14.76</u>	△10.3%
비유조선 (톤당)	내항선 2.82		<u>1.41</u>	△50.0%
	외항선 8.47		<u>7.6</u>	△10.3%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3

기타(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 13개

①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기재부, '01년~)

* '19년 징수 140억원, '22년 징수 142억원, '24년 계획 153억원

- (현황) 영농기술개발 지원 등 국내 연초생산 기반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 담배 제조업자에게 부과(20개비당 5원)
 - 既조성 기본재산의 자산운용수입만으로도 사업비 재원 조달이 가능한 상황으로 당초 부과목적 달성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

▶ [담배사업법 개정]

② 수질개선부담금(환경부, '95년~)

* '19년 징수 148억원, '22년 징수 157억원, '24년 계획 158억원

- (현황) 지하수 자원 보호 및 먹는물 수질 개선을 위해 먹는샘물등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
 - * 샘물등의 취수량·수입량(m^3) × 부과요율(2,200원/ m^3)
 - 지하수이용부담금과 부과 목적 및 사용 용도가 유사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지자체 수입분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
 - 부담금 수입의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분(40%)은 폐지하고, 지자체 교부분(60%)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

▶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개정]

③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산업부, '91년~)

* '19년 징수 2,618억원, '22년 징수 2,466억원, '24년 계획 2,400억원

- (현황)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부과
 - 지역난방 사용자에 대한 설치비 성격으로 부담금 성격 미부합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

* 집단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공급자·사용자간 계약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으로 전환하여 징수

▶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④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 원인자 부담금(문체부, '86년~)

* (이용자 분담금) '19년 징수 24억원, '22년 징수 20억원, '24년 계획 29억원
(원인자 부담금) '14년 아래 징수실적 無, '24년 계획 無

- (현황) 관광지 등의 지원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보수 비용을 입주자 및 공사 원인자에게 부과
 - 이용자·원인자 및 사업시행자 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사항으로 부담금 성격 미부합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

▶ [\[관광진흥법 개정\]](#)

⑤ 도로법 원인자부담금(국토부, '61년~)

* '19년 징수 13백만원, '22년 징수 77백만원, '24년 계획 20백만원

- (현황) 타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한 도로공사의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
 - 도로 손괴에 따른 대집행 비용 성격으로 부과 실효성 없음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

▶ [\[도로법 개정\]](#)

⑥ 시설부담금(산업·물류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국토부)

*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90년~) '19년 징수 2억원, '22년 징수 無, '24년 계획 89백만원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95년~) '19년 징수 無, '22년 징수 無, '24년 계획 無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07년~) '19년 징수 6백만원, '22년 징수 56백만원,
'24년 계획 44백만원

- (현황) 산업·물류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
 - 부과실적이 미미하여 부과 실효성이 낮음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⑦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행안부, '49년~)

* '19년 징수 19백만원, '22년 징수 9백만원, '24년 계획 7백만원

- (현황)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
 - 부과실적이 미미하여 부과 실효성이 낮음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

▶ [지방자치법 개정]

⑧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해수부, '07년~)

- * '16.7월 이후 한시 면제에 따라 징수실적 無, '24년 계획 無
- (현황)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수질관리 및 산업육성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
 - 한시 면제 지속 연장('16.7월~'24.12월) 중으로 부과 실효성 없음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⑨ 댐건설관리법 수익자부담금(환경부, '99년~)

- * '99년 도입 이래 징수실적 無, '24년 계획 無
- (현황) 댐 건설비용 일부를 하류 수력발전사업자에 부과
 - 도입 이래 부과실적 없음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⑩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산업부, '94년~)

- * '94년 도입 이래 징수실적 無, '24년 계획 無
- (현황) 광물 수급·가격안정 및 광업 발전 지원을 위해 광물 수입·판매자에게 부과
 - 도입 이래 부과실적 없음(법 제정 후 시행령 미제정)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

▶ [\[광업법 개정\]](#)